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21
----------	-------

발의연월일 : 2026. 6. 8.

발 의 자 : 이정현 · 허성무 · 박홍배
강준현 · 조인철 · 김우영
김 현 · 곽상언 · 손명수
정혜경 · 정춘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업소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나 한국수어 통역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시각·청각장애인에게 피난안내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위급상황 시 시각·청각장애인의 피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고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에는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로 제작된 피난안내도를 함께 두어야 하며,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韓國手語)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자로 제작된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p>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6. ~ 8. (생략)</p> <p>② (생략)</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u>5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u> <u>점자로 제작된 피난안내도를</u> <u>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한국</u> <u>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u> <u>지 아니한 자</u></p> <p>6. ~ 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